

[별지 제2호의2 서식] 양도·양수·분할·합병 (예비인가, 인가) 신청서(제5조제2항 제3호 관련)

양도·양수·분할·합병 (예비인가, 인가)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90일 (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)	
양수 합병 법인	상호			대표자	성명	
					주민등록번호	
	임원에 관한 사항	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본점소재지			연락처	전화:	
	법인의 목적					
	영위하고자 하는 업무					
	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					
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						
양도 피합병 법인	상호			대표자	성명	
					주민등록번호	
	임원에 관한 사항	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	대표이사 감사				
	본점소재지			연락처	전화:	
	법인의 목적					
	영위하고자 하는 업무					
	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					
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						
존속 법인	상호			대표자	성명	
					주민등록번호	
	임원에 관한 사항	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본점소재지			연락처	전화:	
법인의 목적						

	영위하고자 하는 업무		
	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		
	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		
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(양도, 양수, 분할, 분할합병, 합병)의 (예비인가, 인가)를 신청합니다.			
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(인)			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			
※구비서류 1.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. 재무제표 3. 사업양도·양수, 분할·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4.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		수수료	
		없음	